충청북도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서 정 호

충청북도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최정훈 의원 등 10인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3년 3월 7일

○ 회부일자 : 2023년 3월 9일

3. 제정이유

○ 우리 민족 고유의 의상인 한복입기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이 일상생활에서 한복을 자주 입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도지사가 도내 시·군, 교육행정기관 등에 한복입기를 권장할 수 있음(안 제5조).

○ 한복의 날 지정 및 고유명절 등 주요행사 시 한복입기 활성화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 한복을 입은 사람이 도내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입장료,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한복입기 활성화를 위한 한복 산업 육성 및 지원과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5. 검토의견

가. 제출배경

○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 온 우리나라 고유의 의복인 한복(韓服)은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상징으로 뛰어난 아름다움과 역사적 가치를 지닌 소중한 문화적 자산임. 전통한복은 우리나라 선조들의 양식과 정신, 혼이 깃든 고유의 패션으로, 1,600여 년간 이어져 내려온 한복의 전통성은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역사를 지니고 있음[1]. 현대에도 한복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외신 역시 “한복은 무형문화유산으로서 한국의 일부”(미국, The New York Times, 2022.4.12.)이고, “한복은 2천 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한국의 옷”(영국, Spear's Magazine, 2022.3.23.)이라고 평함[2].

○ 그러나 근래 들어 한복은 특별한 의례 때만 입는 전통의상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아름답지만 입고 활동하기 불편한 옷으로 여겨져 일상 속 한복을 즐겨 입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음. 게다가 한복 수요 급감, 사업 종사자들의 고령화 등 문제로 국내 한복산업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걷고 있는 것이 현실임[3]. 또한, 중국 일부 매체는 한복을 자국의 문화유산이라는 주장[4]을 펴기도 함.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14조 및 「문화기본법」 제9조, 제13조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화예술·산업 진흥 및 문화자원의 개발과 활용을 위한 문화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노력하며, 이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 “외신이 조명한 한복의 의미”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2022.4.18.)
3) “2030 한복은 멋진 나들이 옷…SNS 열기 타고 한복산업 기지개” (한경일보, 2015.9.25.)
4) “한국인은 왜 ‘올림픽 한복’에 분노하나” (서울신문, 2022.2.11.)
“마마무 한복이 중국 전통의상? 중국 역사 왜곡 막장” (노컷뉴스, 2020.12.25.)

○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현재 한복 관련 조례가 제정·시행되고 있는 곳은 서울, 경기,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인천, 광주, 부산, 대구, 제주 총 11곳임. 현재 충북을 비롯한 충청권역(충북, 충남, 대전, 세종)과 강원, 울산만 관련 조례가 부재한 상황임.

나. 주요내용 검토

○ 본 조례안은 10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조 문	규 정 사 항	조 문	규 정 사 항
제1조	목적	제6조	한복의 날 지정
제2조	정의	제7조	고유명절 등 한복입기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8조	한복 입은 자의 우대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9조	육성 및 지원
제5조	한복입기 권장	제10조	포상

○ 안 제2조(정의) 중 “한복”

– 본 조례안에서 입는 것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한복은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의상으로서 보편적으로 저고리와 바지 또는 치마의 전통복식임. 한복의 날을 지정하고, 고유명절, 주요행사 등에 한복 입기를 권장하려는 것은 수천 년간 이어져 온 한복의 원형과 전통성을 최대한 보존하겠다는 취지임. 따라서 편리함을 우선시해 현대 일상복과 유사한 생활한복 및 정체가 불분명한 퓨전한복 등 개량한복을 포함시키지 않음.

– 다만, 한복의 일반적인 형태에서 옷고름이 없거나 옷고름 및 저고리, 치마의 길이가 짧은 경우에 전통한복이 아닌 개량한복이라고 일률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은 점, 그 기준을 섣불리 구체화하는 경우 이에 포섭되지 않는 유형의 한복에 대한 입법 공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개량한복을 제외한다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음.

※ 타 시·도 개량한복 포함 여부

	개량(생활)한복 포함	**개량한복 불포함**
광역	경남, 경북, 부산, 광주, 제주	**전남, 전북, 인천, 대구, 경기, 서울**[5]
기초	전북 전주시, 경남 진주시, 부산 동구, 충남 서산시, 부산 영도구, 경북 상주시, 경기 여주시	서울 은평구, 서울 종로구, 전북 남원시

○ 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

– 안 제3조에서는 우리의 전통의상인 한복입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 안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본 조례의 적용대상과 다른 자치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적용대상이 서로 중복되거나 모순·충돌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 제5조(한복입기 권장) 및 제6조(한복의 날 지정)

– 안 제5조는 도지사가 도내의 시·군, 교육행정기관 및 민간기업 등에 한복입기를 권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6조는 한복입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충청북도 한복의 날’을 지정할 수 있게 하였음.

○ 제7조(고유명절 등 한복입기)

– 안 제7조는 설날, 추석 등과 같은 고유명절과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6]에 따른 국경일 등의 주요행사에 도민이 한복을 많이 입을

---

5) 경기도와 서울특별시의 관련 조례 역시 개량한복을 제외한다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음. 다만, ‘문화재청’이 관리하는 4대 고궁의 《한복 착용자 무료관람 가이드라인》 내용에 따르면, 전통한복·생활한복 모두 무료관람 대상에 포함하고 있고, 성별에 맞게 상의(저고리)와 하의(치마, 바지)를 모두 갖춰 입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반면, 위 한복 착용자 무료관람 대상인 고궁이 위치한 서울시의 조례는 전통한복만을 대상으로 한 지원 조례를 제정·시행 중임. 그렇다고 하여 지원 시행 주체가 상이한 두 기준이 서로 상충되어 일방이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6) 제2조(국경일의 종류) 국경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1절: 3월 1일
2. 제헌절: 7월 17일
3. 광복절: 8월 15일
4. 개천절: 10월 3일
5. 한글날: 10월 9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이를 위해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제8조(한복 입은 자의 우대)

- 안 제11조는 한복을 입은 자가 충청북도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입장료,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해 해당 우대정책을 실시하는 공공시설의 범위 및 감면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 한복 관련 조례가 제정·시행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 11곳 모두가 한복 입은 자가 해당 자치단체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입장료, 관람료를 감면하는 형식의 우대정책 조항을 포함하고 있음.

○ 제9조(육성 및 지원)

- 안 제9조는 도지사가 한복입기 활성화를 위해 한복의 생산 및 보급을 위한 산업을 육성할 수 있고, 한복입기 활성화 문화행사 또는 한복입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 제10조(포상)

- 안 제10조는 도지사가 한복입기 활성화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기관 및 단체, 개인을 대상으로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이와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충청북도 포상조례」에 따르도록 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의상인 한복입기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이 일상생활에서 한복을 자주 입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우리 옷을 보다 자주 입을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전통문화를 계승·발전하려는 목적으로 제정

하는 것인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취지는 일응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 등을 거친바 절차상으로도 타당함.

○ 본 조례안의 내용은 도지사의 한복입기 활성화 시책의 개발·추진 책무를 부여하고, 도내 시·군, 교육행정기관, 민간기업 등에 한복 입기를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한복의 날 지정 및 고유명절 등의 주요행사에 한복입기를 활성화하고, 한복을 입은 사람이 도내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입장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며, 한복입기 활성화를 위한 한복 산업 육성 및 지원과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항의 정책적 실현을 통해 한복이라는 전통문화 자원을 보호하고 발전시켜 도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한복입기 문화 확산과 한복구매 증가로 이어져 한복업계 진흥 등의 효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함.

○ 다만,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한복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전통문화로 계승하려는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계획 수립 및 실효성 있는 구체적인 정책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특히 고유명절 등 주요행사 시 적극적인 한복입기 활성화 실천과 입장료 및 관람료 감면 대상 공공시설의 범위와 감면 기준을 정하는 데 있어 효과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의 내실 있는 집행부 간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붙 임: 충청북도 한복입기 활성화 조례안. 끝.